

第215回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2月4日(月)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3.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4. 자전거利用活性化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5. 賞勳法中改正法律案
6. 奧地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
7.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8.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된案件

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김옥두 의원 발의)(김옥두 의원 외 22인 발의) 1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조재환 의원 발의)(조재환 의원 외 23인 발의) 1
3.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
4. 자전거利用活性化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
5. 賞勳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
6. 奧地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
7.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
8.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 · 강성구 · 권오을 · 김경천 · 김근태 · 김명섭 · 김성순 · 김성호 · 김영환 · 김원웅 · 김일운 · 김희선 · 문석호 · 배기선 · 심재권 · 오세훈 · 유재건 · 윤철상 · 이미경 · 이성현 · 이종걸 · 임종석 · 임채정 · 장성민 · 정동영 · 정동채 · 정범구 · 정세균 · 천정배 · 최용규 · 추미애 · 허운나 · 현경대 의원 발의) 1

(14시34분 개의)

○委員長 李龍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국회 정기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鄭求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김옥두 의원 발의)(김옥두 의원 외 22인 발의)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조재환 의원 발의)(조재환 의원 외 23인 발의)

3.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4. 자전거利用活性化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5. 賞勳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6. 奧地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7.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8.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강성구·권오을·김경천·김근태·김명섭·김성순·김성호·김영환·김원웅·김일윤·김희선·문석호·배기선·심재권·오세훈·유재건·윤철상·이미경·이성현·이종걸·임종석·임채정·장성민·정동영·정동채·정범구·정세균·천정배·최용규·추미애·허운나·현경대 의원 발의)

(14시35분)

○委員長 李龍三 의사일정 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건별 명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늘 저희 행정자치부소관 업무와 예산 그리고 법률안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李龍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저희 정부에서 제안한 5개의 법률을 한데 묶어서 제가 일괄제안토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부터 총괄적으로 5개 법률안의 개략적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상훈법중개정법률안,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입법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등록 이외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기관의 장은 외국과건 근무자 및 휴직자 등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내에서 재산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의 승인권이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종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승인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양양을 통하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고 과학기술포장 역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거나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며 과학기술의 특성을 훈장에 반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훈장 및 포장의 제식과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실시권이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종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결정된 오지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공무원의 권

익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 위촉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청심사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됨으로 인하여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5개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朴奉國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玉斗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읍지역을 주변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본문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면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에는 196개의 읍과 1,229개의 면 및 2,086개의 동이 있으며 그 중 읍에는 다음 <자료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인구의 8%인

382만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다음 <자료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등으로 89년 이후 10조원,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으로 90년 이후 67조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읍지역에는 다음 <자료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2년부터 99년까지 총 8,070억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가로정비사업 등에 투자되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사업지원 법령 등의 미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업비 부족으로 장기계획에 의한 일관된 사업추진이 어려워 민원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비 사업이라는 사업성격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기반 및 삶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읍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거점지역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동 사업을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가보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하여 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趙在煥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의 3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하고 퇴직공무원 및 유관단체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예외적인 취업허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의 3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보면 현재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중 재산등록 의무자는 이 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원장과 이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원장 및 감사인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동 법 개정안도 금융감

독원의 부원장 및 감사에 대하여는 재산등록의무를 법률에 격상하여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직유관단체 임원들의 재산등록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형평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융감독원의 3급 이상 직원을 모두 재산등록의무자로 법률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에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의 3급 이상 직원은 다음 <자료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직원의 41.6%인 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어느 직급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그 책임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동법 제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체계로서는 직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퇴직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예외적인 영리사기업체 취업허용규정을 삭제함에 대하여 보면 현재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후 2년간 재직 당시의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제한은 재직 중 유관 사기업체와의 부정합 유착고리를 차단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상충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퇴직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을 전면 금지하려는 것은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 등의 취업승인요청 시 공직

자윤리위원회의 승인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재산변동사항신고 시에 연간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조정함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은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및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과 감사를 각각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은 직급 구분없이 대통령령에서 재산등록의무자로 일괄규정하고 있어 위헌성 및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등록의무를 법률에 격상하여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한 것은 직급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및 감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도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다른 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이 법안에서 원장, 부원장 및 감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는 범위를 간부직원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재산변동신고 시 연간주식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한 것에 대하여 보면 안 제6조의2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와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급 이상 재산공개자의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한 것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주식투자로 사회적 의혹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고위직 공직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윤리규범준수를 요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 재산등록제도는 일정시점에서의 보유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유재산의 파악은 가

능하나 신고대상기간 중의 재산변동에 대한 실제 거래한 내역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신고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키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투자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경제활동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여 신고거래액 하한선 설정 등 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재산변동사항 신고의무유예에 대하여 보면 안 제6조의3은 해외근무자 및 휴직자에 대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장기해외근무자 및 휴직자도 예외없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 중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되어 있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의 도입은 법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등록재산의 심사강화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심사함에 있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행정상 조치로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에의 공표 등을 하거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끝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함에 대하여 보면 안 제17조는 현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영리사기업체에만 한정하고 업무관련 범위를 퇴직 전 2년간 담당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취업제한대상에 사업자단체인 협회도 포함하면서 퇴직 전 2년간 담당관련업무를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사기업체뿐 아니라 그 사업자단체인 협회에까지 퇴직 후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유관업체와의 유착고리를 차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업무를 “퇴직전 2년간 담당

관련업무”에서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확대하는 데 대하여는 “부서”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 있어서는 퇴직 전 5년간 재직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영향력행사를 목적으로 관련기관 공무원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중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된 시장·군수가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승인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인권자의 변경에 관하여 보면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승인을 모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계층구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의 승인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에 대한 협의기관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의 승인권자가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행정체계를 정리한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상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과학기술훈장 및 포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신설에 대

하여 보면 현재 정부에서 수여하고 있는 훈장은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 각 분야별로 수여대상을 구분하여 11종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는 각 훈장이 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11종의 포장을 두고 있으며 훈장과는 달리 등급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 과학기술훈장 및 포장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훈·포장은 <자료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부처에서 국민훈(포)장과 산업훈(포)장 등으로 수여하고 있어 이러한 국민훈(포)장과 산업훈(포)장이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및 산업전반의 분야에 걸쳐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물론 과학기술자 스스로도 훈(포)장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훈(포)장의 권위와 인지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예로서 미국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는 과학메달을, 기술상업화 및 인력양성에 기여한 개인·팀·기업에게는 기술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곧 국가발전의 핵심적 요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의 고취를 위해 독자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훈·포장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과학기술분야의 훈·포장제도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훈장을 수여함에 있어서 과학분야, 공학분야 등 수여분야 및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과학기술훈장 및 포장의 제식과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훈(포)장의 제식과 규격에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던 오지개발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토록하며, 오지개

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 보면 지금까지 오지개발지구의 지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대상지구로 확정·고시하고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실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오지개발지정신청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조사실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할 단체장이 지역실정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오지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보면 정부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총 372개중 145개를 폐지하면서 오지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지개발심의위원회는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동 심의위원회는 다음 <자료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차관급 12인과 외부위원 4인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심사대상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오지개발계획(5개년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한편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중복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심의절차의 간소화가 요청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던 동 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오지개발계획 등의 수립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오지개발지구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조문을 삭제하는 등 개정조문은 동 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기능 보장 등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 및 이 법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하여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은 3인으로 하고 있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당해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자치단체장이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을 상향조정할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에 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고·자격정지·파면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통일을 기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특정 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함에 대하여 보면 현행 제9조에서는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담당국장이 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 제1인사위원회는 5급이상, 제2인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 후단은 부시장·부지사를 3인 두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도사무 일부를 관장하던 종전 북부출장소를 제2청사로 격상하여 제2행정부지사가 관할 도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제2행정부지사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어 도본청 제1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통합관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지역을 관할하는 제2행정부지사가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감안하여 그 소속 하에 인사위원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시행케 하려는 것으로 이는 특정지역 관할을 위해 도입한 제2행정부지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기능 보장에 대하여 보면 안 제15조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법률학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에는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공무원 권익보호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행하는 인사위원회를 각각 두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인사위원장은 부지사·부시장 또는 인사담당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 시·도 중 8개 시·도 소청심사위원장을 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있어 징계의결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공무원 구제기능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같은 기관 내에 설치되고 위원장이 대부분 동일기관의 소속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신분상 구제기능을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소청심사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개방형직위의 도입 운영에 대하여 보면 안 제29조의4에서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필요한 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와 체계상의 통일을 기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에게도 확대적용하여 지방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이 입법취지 대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직위에 민간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다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용결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개방형직위의 범위와 합리적인 임용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규정함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지급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상용일용직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구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도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규정 신설은 경력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기념일로 되어 있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하려는 것입니다.

국경일은 1949년10월1일 제정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동 법은 4대 국경일로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규정하여 개국이나 국권회복 등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날을 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을 기리는 날로 승화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한글날은 다른 38개의 기념일과 함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검소한 행사만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다음 <자료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정 당시에는 기념일로서 4대 국경일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되어 휴일

로 되어 있었으나 91년부터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여부는 국경일체도를 두는 취지와 한글날의 의의를 깊이 검토하고 사회각계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俞成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俞成根委員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의 주식거래내역신고 대상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에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최근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금융비리에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특히 공무원들의 주식거래에도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되는 주식거래내역신고제는 개정안의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만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및 경제관련 부처의 재산등록대상 공무원 전원과 금융감독기구의 임직원 전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주식거래 내역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안 중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촉 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외부위촉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나 초·중·고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그리고 전직 공무원

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위촉 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거꾸로 말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과반수 이하로 줄이려 하는 것이라면 외부위촉 가능자 중에서 전직 공무원도 이제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인사관련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전직 공무원 이외에 다른 직종에서도 전문가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수를 과반수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간의 사적 인연이나 단체장의 입김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한 전직 공무원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체별 인사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판사, 검사, 학교장 등은 위촉실적이 전혀 없는데 반해서 전직 공무원의 경우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한 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직 공무원을 계속 포함시키게 되면 전·현직 공무원의 위원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차체에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朴鍾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委員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자체 개방형직위 도입대상 직급이 1급에서 4급으로 되어 있어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공보, 전산, 법무, 회계 등 많은 부분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지방단위에도 개방형직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개방형직위는 몇 개로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방형직위 도입으로 계약직·별정직 등 많은 직위에 외부인력이 영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4

급 이상의 총 직위 중 몇%까지로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당분야의 석사라든가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자격증소지자들이 임용될 것으로 보여서 업무추진 면에서는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반 하위직의 승진기회가 막혀서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것이 지방관가에 퍼져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서 5년 근무하고 재계약을 해서 10년 근무하게 되면 인사적체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개방형 계약직공무원과 기존 공무원 사이의 의사소통과 조직 내부의 갈등요인이 우려되는데 화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계약직과 별정직 등을 통해서 아웃소싱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업무가 새로운 시책개발 또는 일반행정의 새로운 아이템 제공이 아니라 기관장의 정치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등 일반행정과 거리가 먼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康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來委員 李康來 위원입니다.

지도 존경하는 朴鍾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연계해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중 개방형직위에 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행자부장관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개방형직위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대단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입 초기 1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외부전문가 채용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점이 있고, 개방형직위로 했지만 민간분야에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것 등이 복합되어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직도 민간과 경쟁해야 되고 외국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운용하면서 필요한 부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李康來委員 장관님께서 이 제도의 취지나 목

적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康來委員** 본 위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씻고 새로운 수혈을 해서 조직분위기를 쇠신하려고 하면 개방형직위를 상당수준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공무원제도의 골간이 되고 있는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를 훼손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골간을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개방형직위를 시·도 공무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기간 동안에 확인해 본 결과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직위들이 지방 시·도에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운용은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해 버리고, 그리고 몇 년 하니까 실질적으로 채용인원보다 이직인원이 많아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올 수 있는 정실주의에 관한 우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도 단위별로 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임용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와 연관된 미국식의 엮관계적 성격의 정실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전적으로 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閔鳳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鳳基委員** 상훈법중개정법률안을 보면 현재 11개 종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각 부처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각 부처별로 다 들어

가지는 않으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閔鳳基委員** 산업훈장에 포함시켜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과학분야라고 해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산업분야에 포함시키거나 국민훈장의 개념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대단히 진흥의 필요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국가발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같다고 보는데, 과학기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자로서 훈장을 하나 받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독립적으로 함으로써 과학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閔鳳基委員**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또 여건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훈장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閔鳳基委員**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하고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을 시·도지사들한테 이양을 하면 오지에 대한 개념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것하고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각양각색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시·도지사들한테는 개발계획을 할 수 있는 수립권만 주었고, 오지개발의 개념은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閔鳳基委員** 그리고 자전거이용도로는 이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저희가 금년에도 국비요구를 했습니다.

○**閔鳳基委員**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이양한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閔鳳基委員** 예산지원은 그대로 해주는 것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閔鳳基委員** 분명히 그렇게 못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알겠습니다.
○**閔鳳基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宋錫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委員** 장관님께 질의 겸 앞으로 공무원들의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건의 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사회가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면도 있지만 또 그늘진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하는 것을 전 공직자로 확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전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법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부패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야의 공무원까지 다 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심사능력의 문제, 부패하고 연관 없는 전 공직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부가하는 문제 이런 것 등이 문제로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라든지 등등 이런 일반 대민접촉이 전혀 없는 그런 공무원들까지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직위 이상하고 세무, 소방, 경찰 이런 데는 하위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능력의 문제, 부패우려가 없는 공무원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번거로움, 업무량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분야별로 구분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宋錫贊委員** 각 위원회를 각 자치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공직기관마다 정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문제성이 있으면…….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중앙부처는 중앙 행정부처에서 다 합니다.

○**宋錫贊委員** 아니 자치단체별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체크 다 할 수 있고…….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러나 자치단체로 하더라도 업무량 문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패하고 관련이 없는 농촌지도소 공무원들까지 다 등록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宋錫贊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다음 朴鍾熙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鍾熙委員**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을 보면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비리 자치단체장이 비리 공무원을 징계를 하는 이런 모순되는 것도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금품수수라든가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단체장의 인사위원회 임명권 자체를 제한하는 이런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장 자신이 금품수수라든가 비리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하위직 공무원을 징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영도 서지 않고 해서 이것은 부단체장이 한시적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방안이 어떤가 하는 그러니까 일반 상식과 상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검토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자치단체 인사위원장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이거든요. 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위원 위촉할 때, 비리연루자가 위원 위촉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선 법적으로 징계제도가 없는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고 또 우리 형사소송법상 보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끝내기 전까지는 무죄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형이 얼마 이상 확정되면 자치단체장 물러나 버리는데 무죄추정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비리연루자라고 보고 제한을 한다 이것이 형사법상, 공무원법상 배치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장이 구속이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종합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서는 1심만 가더라도 저 사람은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대법원 확정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의 균형을 고려해서 입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鍾熙委員** 하여튼 비리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에 계류 중인 단체장 중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아니 있습니다. 지난번 안양시장도 그랬고 그 다음 옛날에 예천 군수하다가 씨프린스호사건으로 그때 뇌물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분도 대법원 판결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朴鍾熙委員** 실행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단체장을 사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이런 인사권이라든가, 단체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제한하는 이런 지방공무원법 개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다음 元裕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裕哲委員** 의사일정 8항 국경일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 崔仁基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제가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휴일을 만드는 문제는 이것이 산업생산과도 연관이 있고 또 근로자 수출,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한편 또 국민 일반의 정서는 공휴일이 늘어나면 봉급자들은 아무래도 휴일이 느니까 희망하는 이 두 개의 정서가 있습니다.

지금 국경일은 쉬는 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해서 주로 개국, 해방, 독립운동 이렇게 국가의 건국과 관련된 주로 그런 날을 국경일로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글 창제의 의의는 문화적으로 그 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정말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고 오히려 알파벳보다도 한글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공감의 정도, 공휴일의 전체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鄭文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文和委員** 상세한 내용들은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들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요.

지방공무원법중 개방형직위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국가공무원 중에서 그동안에 성공한 예가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에도 채용해도 괜찮다 할 정도까지 그런 것을 좀 예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이 제도 자체는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용하려면 밑바탕이라든가 사회제도라든가 공무원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이 돌아야 되는데 한쪽에만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돌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면 또 갈 데가 있고 또 올 데가 있고 의욕있는 공직자들도 다른 데 나갈 데가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돌아나가는 사회제도가 돼야 되는데 한쪽은 직업공무원제도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다른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이 막혀 있는 제도하에서는 이것이 신분상 상당히 불안하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수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지금까지 해본 결과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훈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의 과학·기술메달, 자료3입니다. 보시면 과학메달이 62년부터 98년까지 36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메달은 역시 85년부터 98년까지 108명입니다. 이것도 10명이 채 안되지요.

그런 상황인데 그 위의 4페이지를 보면 우리 99년도 과학·기술분야 포상내역에 국민훈장, 산업훈장 포함해 가지고 한 해에 70명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과학·기술메달을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데 잘못하면 양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스러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잘 챙겨 보시고 그동안 몇 년 동안에 훈장 나갔던 이러한 예들을 소위원회에서 자료로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로 만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되는 것 같은데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만들 때 이것이 사고파는 문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저 자신은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통령령에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참고로 소위원회에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재산의 심사문제에 있어서 안 제 8조7항인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 혐의를, 이것 주식하고도 관련이 생기고 제일 많이 관련이 생길 부분에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그 혐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것이 검사라든가 이런 수사기관 같으면 혐의를 파악하기가 아주 쉬운데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취업대상 제한을 부서로 이렇게 못 막아 버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 자기가 전혀 근무하지도 않고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자기가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라고 해서 제한이 되어 버릴 사항인데 이것 관계 없는지, 이 논의는 정부 내부에서도 해본 사항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렇습니다.

○**鄭文和委員** 그때 논의되었던 사항을 이 부분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때 논의된 내용은 우선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3년간 근무하던 담당부서의 업무, 그것도 협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 해가지고 차관회의에서 아주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옛날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또 퇴직후에도 일정한 취업과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직풍토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한쪽에서 또 강하게 있고요.

그 논란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차관회의에서 2주간 토론하다가 다시 연기가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공무원들의 청렴의지 이런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처음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부서는 해당기관단체의 직제상 최소단위인 과를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과장 이상 상위직위에 대해서는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로 하자 대강 이렇게 차관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법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鄭文和委員** 감독하는 부서입니까? 내가 국장으로 근무했으면 내가 3년내에 근무한 국장의 부서…….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국장 밑의 부서인 과…….

○**鄭文和委員** 밑의 부서만 부서로 본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부서로 본다. 그리고 과장으로 근무했다가 나오면 그 과만 부서로 본다.

○**鄭文和委員** 그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鄭文和委員** 지금 현재의 조문만 봐서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래서 부서의 개념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부서 하면 차관보 산하를 부서 이렇게 본다든지 민방위본부장 산하를 부서로 보고 이렇게 좀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다가 그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鄭文和委員** 뒤에 좀더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朴宗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宗雨委員** 감사관에게 내가 뭐 좀 물어봅시다.

오늘 제안된 법률안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일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용인시의 공무원들이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 이후인가 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 이하 관련공무원들이 전부 징계를 받은 일 있지요?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예.

○**朴宗雨委員** 그것이 얼마 안됐지요?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예, 얼마 안됩니다.

○**朴宗雨委員**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까, 행자부 감사입니까?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朴宗雨委員** 그러면 처분요구가 내려왔겠네요?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예.

○**朴宗雨委員** 그러면 처분요구가 내려왔을 때 부시장에 대한 처분요구를 가지고 징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朴宗雨委員** 그 처분요구사항 가운데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시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宗雨委員** 시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나?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예.

○**朴宗雨委員** 그러면 시장에 대한 결재라인상으로 볼 때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그 해당사건에 대해서 시장이 결재선상 최고책임자로 사인이 안됐습니까?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서 소상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한 달도 못됐습니다.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보고를 받기로는 시장은 그 업무상의 지도 감독책임이 있지만 징계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감사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朴宗雨委員** 그러니까 지휘 감독권은 있지만 책임까지 질 것은 아니라고 행정자치부가 감사원의 얘기를 들어서 판단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명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행정의 행태로 보면 부시장이 난개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정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시장한테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행정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저도 되는 것이고 행정자치부 내에서 아마 과장이나 국장 정도가 사고를 크게 치면 장관도 자리에 앉아있기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물러가든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바로 직하의 부시장이 그런 일을 다 책임을 졌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초연하다는 것은 지금 지방행정에 있어서 자치도 좋지만 맹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行政自治部服務監查官 南孝彩** 그 부분은 내용을 제가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 행정상 책임 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책임과 부시장의 책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장에게 전혀 행정적인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자치법 체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장관들도 탄핵제도가 있고 일반공무원은 징계제도가 있고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윤리위원회 자체 규율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에게는 전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朴宗雨委員** 지금 장관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이라는 국가 감사기관에서 지적하면서 시장이나 군수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치더라도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 이러한 책임은 저야 한다는 것은 적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못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일단 부시장이 지는 책임만큼은 같이 저야 한다는 감사결과의견서는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제도상 문제, 자치법상 시장, 군수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차원과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시장이 보궐선거로 되어서, 전임자가 뇌물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시장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되어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저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도 감사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宗雨委員** 알겠습니다.

○**朴鍾熙委員** 감사결과보고서를 내주세요. 그리고 용인시장은 기관경고를 받은 것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시장이 난개발로 경고 받은 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전임자가 뇌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어서 재임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을 묻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들 답변 안 드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委員長 李龍三** 소위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8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신 대표발의자 辛基南 의원이 오셔서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辛基南議員 안녕하십니까? 辛基南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역사적인 이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마침 잘된 것이 행정자치부장관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상 제가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까지 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온 국민 특히 문화계의 오래된 열망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시고 이어서 찬성서명까지 해 주신 현재 100여분의 여야 4당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대신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한글날이 49년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82년에는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에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추석연휴를 하루 늘리면서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즉각 문화계를 비롯한 전 국민적 반발이 잇따랐고 그후 10년간 한글날의 지위 격상을 위한 국경일 지정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99년 3월에 한글발전종합추진계획을 세우고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 벽두를 맞이해서 새로 구성된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성사시키라는 국민의 여망이 전달되어 지난 9월 29일 여야의원 33명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고 지난 11월 15일 여야 4당 의원 47명이 한글날 국경일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작년 한글학회에서 실시한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0.6%가 한글날 국경일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공휴일 지정은 거의 80%가 찬성하고 있고 올해 10월 2일에서 4일까지, 그리고 지금도 실시 중인 인터넷 한겨레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91%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고

세계 석학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샘슨이라는 언어학자는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성취의 하나’라고 얘기했고 미국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 교수와 하버드대학의 라이샤워 교수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이런 것이 태어난 한글날은 세계인 모두가 축하해야 할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97년에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인 모두가 한글과 한글날에 대해 찬사와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어로 사용되는 문자가 창제된 것은 세계 역사상 한글이 유일한 것입니다. 국어가 만들어진 날과 만들어진 주체와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나라 또한 우리 나라 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문자 창제를 경축하는 국경일이 없다는 사실은 90년도에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글날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강조하는 데 인용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즉 세계 어느 나라든 문자를 언제 누가 창제한 일이 없었기에 한글날과 같은 경축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글 창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우리 민족의 업적인 것입니다.

한글날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이견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확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경영계의 소극적인 입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李龍三 위원장, 元裕哲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 또한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 공휴일 수는 16일로 일요일인 52일을 합쳐도 68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익일 휴무제가 없습니다. 즉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다음 날 쉬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약 65일 내지 67일이 됩니다. 이것은 선진국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중진국, 예를 들면 인도와 아르헨티나가 122일, 스페인 118일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많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또 만약 실시된다 하더라도 실제 휴무일은 114일 내지 117일로 115일 전후로 일본이 124일, 독일과 벨기에의 118일에 비해 여전히 적습니다.

또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얻는 휴가일수를 따져보면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월차휴가 12일 가운데 4.5일을 평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11.6일 가운데 평균 3.7일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한 주당 실제근로시간은 우리 나라가 48시간, 대만 46시간, 미국 41시간, 일본 38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에서 휴일이 많아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에 있어서 산업생산성만을 이유로 반론을 펴는 것은 가치부여에 있어서 주객전도라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날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혜택은 공휴일 하루분의 생산성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한글과 한글날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며 이로써 한글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사랑을 높이고 한글이 소중함과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화역량이 국가역량을 좌우하는 문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최고의 문화적·학문적 성취인 한글창제를 기점으로써 문화민족의 긍지를 고취하고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배가한다는 의미도 큼니다.

국가정책 측면에서도 한글날의 위상 재정립은 한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 연구를 활성화하여 정보화에 적합한 한글의 특성이 더욱 발전되고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문자창제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사람들도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인식케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각국이 문화에 관계되는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일본도 11월3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서 우리 나라의 국경일에 해당하는 국민축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상징인 한글이 만들어진 한글날은 개국기념일은 개천절과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에 견줄만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리는 국경일로 한글날이 지정되는 것은 마땅하고 1949년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입법정신을 살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휴일이 많다는 근거없는 걱정으로 미루어 들일이 아닙니다. 문화의 세기가 시작되는 바로 지금이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21세기에는 찬란한 한민족의 문화가 꽃 피울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李秉錫委員 제안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 위원이니까 심사과정에 참고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辛 의원님께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발의 이전에 한글전용과에 속했습니까, 국한문 혼용과에 속했습니까?

○辛基南議員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개인으로 말하면 전용론자였습니다. 제 아들이름도 사실은 한글로 짓고 했습니다.

○李秉錫委員 왜냐 하면 한글날이 국경일로 만들어진 이후에 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辛 의원께서 한글전용 주장과 국한문혼용 주장 사이에서 우리 나라의 장기적인 문화창달에 있어서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 양쪽에서 어느 입장에 서고 어느 입장이 궁극적으로 한국문화의 장기적인 창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基南議員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한자 한문은 우리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한문 한자 교육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공용어로 쓰거나 공문서로 쓸 때는 한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한자를 무시한다거나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된 많은 참고자료는 오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님들께 문서를 보내드렸고 법안심사할 때도 더 많은 참고자료를 가지고 와 설명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李秉錫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공휴일의 날짜를 하나 더 늘리자 안 늘리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국적인 우리 나라의 문화지향의 방향과 내용까지도 감안한 법안심사소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참고하기 위해서 드린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元裕哲 辛基南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산회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제안설명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

(김옥두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2000.11.

발의자: 김옥두 의원

찬성자: 22인

제안이유

읍지역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또는 행정적 관점에서 볼 때 도시와 농촌사이의 중간지위를 갖는 행정단위로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8%인 382만3,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도시와 농촌지역에 편중된 정부지원 시책에서 오랜기간 동안 소외되어 생활편익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경제·문화 등 주민의 소득과 삶의 수준이 상당수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인구과밀의 거대도시 확산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읍지역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

주변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서 읍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읍지역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은 읍지역을 주변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소도읍지역의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지방소도읍 대상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되 민간인의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시행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공장설립 승인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여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제·금융지원을 받은 민간개발사업자는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제20조).

바. 기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소도읍 지역내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용적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조재환 의원 발의)

최근 발생한 동방·열린금고 사건과 같은 금

용 부조리가 다발하고 있음. 이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소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비리설과 관치금융 및 낙하산 인사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음. 실제로 2000년5월 현재 은행임원만 하더라도 금감원·재무부·한국은행 출신이 21명이나 됨.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심의기능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임.

<은행임원 중 감독기관 출신자 현황>

기업 이경재행장 은감원부원장보·수출입 신현철이사 한국은행 춘천지점장·수협 김성희 부회장 금감원부원장보·한빛 이축엽 상근감사 은감원 부원장보·국민 김상훈행장 금감원 부원장·환은 김경림행장 은감원 부원장보·허고광상근감사 한국은행비서실장·주택이우정부행장 재경부·신한 최영휘부행장 재무부 강희문 상근감사 한국은행 목포지점장·한미 이병규상근감사 은감원감독기획국장·하나 김영기상근감사 금감원 감독조정실장·평화 김경우행장 재무부 박혜문 상임감사 한국은행 비서실장·대구 이영무상근감사 금감원 감사1팀장·부산 한국은행 입세근부행장 신용감독국장·제주 강중홍행장 은감원 감독기획국장·박태근상근감사 은감원 검사2국 수석부국장·전북 박찬문행장 한국은행 조사부장·하종인상근감사 한국은행 조사부장·경남 홍순우상근감사 금감원 검사실장

<금감원(1급이상)·금감위 퇴직자(99년 이후) 중 금융기관(은행제외) 취업자 수>

현대증권 강대화감사·영풍생명 문창현사장·신영증권 송한준감사·투신업협회 이갑수상무·주은투신운용 이유성이사·현대생명 조정영감사·신동아화재 최인동감사·동부증권 하정원감사·엘지화재 허만조감사·제일투자신탁증권 김용대 감사·대일토크스뱅크와치평가신용정보 조창현대표이사 금감위 구조기획단·키움닷컴 김범석 사장 금감위 구조기획단·KTB네트웍 정준호이사 금감위 기획행정실

이렇게 피감기관이 감독자 자신의 다음 직장으로 인식되는 풍토에서는 엄정한 검사가 이루어질리 만무함.

취업제한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임원들에 한해서는 현행법에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있는 업무분야에 국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공직자윤리법 제3조를 본 안대로 개정하여 금감원의 3급(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동법 제17조를 적용 받게되어 금융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出席委員(18人)

權泰望	金忠兆	陸堯相	閔鳳基
朴宗雨	朴鍾熙	宋錫贊	元裕哲
兪成根	柳在珪	尹斗煥	李康來
李秉錫	李龍三	李元昌	全甲吉
鄭文和	河舜鳳		

○委員아닌 出席議員

辛基南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朴奉國
전문위원	兪炳坤

○政府側參席者

행정자치부

장관	崔仁基
차관보	趙泳澤
기획관리실장	金範鎰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權炯信
인사국장	金周燮
자치행정국장	金之淳
지방재정세제국장	金住炫
복무감사관	南孝彩

【報告事項】

○議案回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심규철의원 발의)

(11월29일 심규철 의원 외 21인 발의)

11월30일자 회부됨.

민원사무처리예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11월30일 박주선·김경재·김민석·김부겸·김원길·박병석·박주천·서상섭·안대륜·엄호성·이강두·이부영·이성현·이훈평·임진출·임태희·장태완·조재환·유재규·전갑길 정문화·원유철·이강래·이원창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보수법안(전갑길 의원 발의)

(11월30일 전갑길 의원 외 36인 발의)
이상 2건 11월31일자 회부됨.

○議案撤回

地方讓與金法中改正法律案(全甲吉 의원 발의)

(7월25일 全甲吉 의원 외 45인 발의)
12월1일 발의자 철회요구

○請願提出

인천화재참사부상자보상에관한청원

(2000년12월1일 인천의 남동구 구월동 1133-6 정윤빌딩 4층 노인환외 57인으로부터 徐相燮 의원외 28인의 소개로 제출)
12월1일자 회부됨.